

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안내

출처 : 한국오리협회 (2017.5)

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농가는 법에서 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들은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

이동제한이 해제된 농가는 인근 지역의 교육기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기한 내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 보수교육 기한 : 본인의 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하단에 기재
- * 협회에서도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교육실시 예정

또한 AI 및 구제역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“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”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* 온라인교육 : PC 또는 스마트폰 앱 이용
- PC에서 www.farmedu.kr 접속 또는 앱스토어 “축산관련종사자교육” 검색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제지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 | 로그인 | 회원가입

교육소개 | 교육일정 | 교육수료 | 알림마당

1 교육일정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세요. 교육일정 확인 +

2 교육신청 교육을 신청하세요. 교육신청 바로가기 +

3 교육수료 교육 수료를 축하드립니다. 수료증 출력하기 +

i 교육상담 및 지원센터 : 전화 1600-8844 (평일 09:00 ~ 18:00)